



## 고객리스트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 및 부정사용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26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5년(와) 제10721호
판결 일자	2004. 4. 13.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유한회사 버드랜드 뮤직		
피고	합자회사 녹스 엔터테인먼트 외 4명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고객 리스트 및 등록 아르바이트생 리스트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음악 제작, 음악가의 양성, 음악 저작권 관리, 콘서트 및 각종 이벤트의 기획, 제작 등을 업무로 하는 유한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 종업원이거나 전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되어 원고의 콘서트 이벤트 사업 부문인 「톱 기어」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기 피고들은, 피고A가 원고를 퇴사한 후, 2003년 1월에 피고 합자회사 녹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원고와 경업하는 행위를 시작했다.

본건은 행사를 실시하는 주최자 내지 그 원청의 의뢰를 받고, 등록아르바이트생을 파견하는 업무를 일상 업무의 하나로 하는 원고가, 원고의 전 종업원인 피고들이 근무 중에 특별히 반출이 허락되었던 고객 리스트 및 등록 아르바이트생 리스트를 자신들의 고객으로 삼기위해 사용하고,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은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근무 중에 반출이 허락되지 않았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 내의 본건 정보를 사용했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본건 정보는, 원고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내의 폴더에 입력되어 보관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플로피 디스크 등의 매체에 복사해서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본건 정보를 출력한 고객 리스트 및 등록 아르바이트생 리스트는, 원고 사무소 내의 문이 달린 책장 안,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서랍에는, ‘반출 엄금’ 및 ‘사외비밀’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일부 피고에게 주어진 반출 허락은, 이벤트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예외적 조치이며, 그가 퇴직한 후에 상기 모든 서면의 보유가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 시에 원고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등록 아르바이트생 리스트는, 종업원 각자가 자신의 서랍 중에 보관하거나 또는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었고, 이것이 허용되었다.

원고 주장의 서랍에는, ‘반출 엄금’ 및 ‘사외비밀’의 표시가 없었다. 피고들은 일의 과정으로 직접 등록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용으로 메일 주소를 물어서 상기 컴퓨터 및 개인 소유의 휴대 전화에 입력했다. 그리고 고객에게 원고에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들은 필요한 인원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 또는 휴대 전화에 입력한 등록 아르바이트생의 메일 주소 앞으로 연락을 취해 일정의 형편을 듣고 인원을 뽑고 있었다. 피고들과 등록 아르바이트생끼리도 서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메일 주소를 주고받았다.

### 04 판결 요지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해서 판단되는 것인데, 원고 소유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각 종업원에게 배포한 고객 리스트의 사본 수를 확인하여 동수의 사본을 사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배포한 고객 리스트에 관한 정보를 제3자 등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들이 정보 및 전자 메일주소를 자신의 컴퓨터 혹은 휴대 전화에 입력하고 있던 것을 허용하였다.

원고 사무소에는, 원고 대표자 및 종업원을 아울러 4명이라는 극히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 책장에 열쇠를 걸거나 상기 파일에 접근하는 자를 일정한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의 관점에서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상

---

항 하에서, 예를 들어 취업 규칙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 사이에서 엄격한 비밀 유지 약정을 정하는 등의 조치나, 예를 들어 복사하는 경우에 배포 부수를 확인하거나 사용 후 사본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

---

## 05 Key Point

---

소규모 회사라고 해서 비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계약서로 엄격히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고, 복사본에 대한 회수 등의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전자데이터의 형식으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암호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출력한 자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반환받아야 한다.

---